



Monthly Tax Newsletter

Issue 110 | August 2023

삼성KPMG 세무본부 TKC

Contents

	Page
조세특례제한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례] 외국인투자로 인한 출자목적물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승) 	
소득세법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판례] 계속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이후 미납을 이유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부가가치세법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규] 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이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례]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 (국승) • [예규] 특정법인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관세법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판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판례] 외국인투자자로 인한 출자목적물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승)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5272 판결

[사안] 원고는 A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A사는 원고와 2013년 제조공장 설립을 위하여 미화 약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3. 31. 외국인투자지역 내 부지에 제조공장의 설치를 완료하였음. 이후 2014. 7. 15. 기존 제조시설의 증강을 위하여 신규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0. 15. 당시 시행되던 구 외국인투자촉진법(2016. 1. 27. 법률 제13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A사가 원고의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직접투자(“이 사건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투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되어 2014. 12.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2. 30. 법률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 2 제3항 제1호 가목(“이 사건 감면조항”)의 외국인투자자에 관한 법인세 감면요건(“이 사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조세감면 신청 후 유상증자 대금을 송금받았고 조세감면결정 통보받았으나, 피고는 원고의 조세감면이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등을 경정하여 부과함.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감면대상인 ‘외국인투자’를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나, 여기서 ‘외국인투자’란 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하는데, 동 제4호에서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외국인투자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위 주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출자목적물’과는 그 의미가 다르므로, ‘외국인투자금액’과 마찬가지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재원을 뜻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이 사건과 같이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신주 취득(같은 법 제5조)뿐만 아니라, 기존주식의 취득(같은 법 제6조), 전환사채에 기한 주식 전환(같은 법 제7조 제5호), 장기차관 방식(같은 법 제8조)과 같이 자본금의 출자 없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및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의 2 제1항에서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를 반드시 현금 등 재원을 실제로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법 문언 체계 아래에서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출자목적물을 직접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외국인투자 중 그 출자목적물로 직접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형태의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불가능해지므로 이는 법령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뛰어 넘어 조세감면대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감면대상을 사전에 투입된 투자금으로 사업에 영위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그 시설이 설치된 이후 투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어 기존에 투입된 시설설치자금으로 충당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약설(略說)]

- 1심(전주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구합477 판결)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 의하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제조업을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금으로 투자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이 사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와 달리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수긍함.

소득세법

[심판례] 계속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이후 미납을 이유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2중6978, 2023. 6. 14.

[사안] 청구인은 코스닥상장법인인 A사 및 비상장법인인 B사의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B사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음. A사는 2016. 12. 16. 제3자 명의의 청구인 소유의 B사 주식(“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자들로부터 취득하였음.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A사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결과 매입가액과 시가 간 차액(“쟁점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A사에게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 처분청은 A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A사가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A사에게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후 A사가 해당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22. 4. 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함.

[판단] 처분청은 A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이후 미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가 있는 후에 있어서는 그 징수한 원천소득세를 징수한 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288 판결)인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를 보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집행기준 제85-0-2(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세액의 징수)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를 동일하게 해석·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집행기준 제85-0-2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하였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를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결정(경정)은 하였으나 그 세액이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80누288 판결)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서 열거되어 있듯이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A사의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의 퇴사에도 불구하고 A에게 계속사업자로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여 이를 안내한 후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자 2021. 5. 1. A사에게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A사가 해당 상여처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2. 4. 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라는 동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 과세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천징수의무자인 A사는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이 건으로 인한 고지세액 중 부가가치세는 전부 납부를 하였으며 이 건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외 다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는 일부 납부를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의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및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계속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퇴사로 인하여 징수하기 어려웠을 사정은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사법상 채권·채무로 보아 당사자 간 구상권 행사로 상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가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A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여 해당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약설(略說)]

- 대법원 판결 및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1차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거나 근로소득자가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위 사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한 것임.
- 과세관청은 원천징수가 누락되었거나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이 현실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입증하여 원천납세의무자에게 해당 소득세를 부과처분할 수 있음(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누4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예규] 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이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2022-법규부가-4978, 2023. 7. 18.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A법인”)가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각각의 독립된 과·면세 재화(“쟁점재화”)를 함께 공급하고, 배송사업자와 ‘배송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에게 쟁점재화를 배송(“쟁점용역”)함에 있어 쟁점용역이 A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쟁점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쟁점용역이 A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쟁점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A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배송비를 쟁점재화의 각 공급가액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 또는 면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약설(略說)]

- 본 사안의 질의법인은 사이버몰을 통해 과·면세 재화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고객이 주문한 상품의 배송업무는 질의법인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배송사업자를 통해 수행하고 배송비는 질의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취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해당 배송용역이 ①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만약 그러하다면 그 공급가액 산정 방법에 대해 질의하였음. 위 국세청 예규는 ① 국세청이 해당 배송용역이 독립된 과세용역이 아닌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공급되는 상품의 과·면세구분에 따르기 위한 기준으로 ‘배송용역이 질의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을 제시하였다는 점, ② 부수적인 용역으로 판정될 경우 현행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 공급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을 예시하였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 (국승)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405 판결

[사안] 원고들은 공소외인의 자녀들로, 03년경 비상장법인인 A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 공소외인은 상장법인인 B사의 최대주주로서 구 상속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5 제1항에 따른 A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데, A사는 2005. 11. 5.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이 사건 유상증자"), 원고들은 공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재원으로 배정받은 신주를 인수하였음("이 사건 신주"). B사는 2009. 5. 13. A사를 흡수합병하였고("이 사건 합병"),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에 대한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음.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합병으로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법 제41조의 5 제1항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였음.

[판단] 구 상속세법 제41조의 5 제1항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전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 제41조의 3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구 상속세법 제41조의 5 제1항은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실제로 합병된 후의 합병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임(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속세법 제41조의 5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8 제1항, 제31조의 6 제3항, 제5항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각 차감하는 방법으로 '1주당 합병상장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 시 발생한 구주에서 신주로의 경제적 가치 희석분이 자기증여에 해당하므로,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유상증자 시 '구주의 주주'로부터 '신주의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자기이익분여 또는 자기증여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합병상장이익 계산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의 8 제1항, 제31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문언상 이를 합병상장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함.

[약설(略說)]

- 공소외인(公訴外人)이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공소한 사건관련자가 아닌 사람을 말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누64985 판결)은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①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의 8 제1항, 제31조의 6 제3항, 제5항에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에 기초한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자기증여분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신주 발행으로 인한 구주의 가치하락은 신주의 저가 발행으로 인한 '일시적 손해'일 뿐, 구주의 주주로부터 신주의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 또는 증여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배척하였음(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구합59066 판결임).

[예규] 특정법인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347, 2023. 6.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을 직접보유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약설(略說)]

- 2019. 12. 31.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상증세법 제45조의 5, 상증령 제34조의 5)의 개정 이전에는,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 기재부와 조세심판원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비율도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음(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 7. 28., 조심 2022서5695, 2022. 11. 23. 참조).
- 이후 2019. 12. 31.자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에는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위 기재부와 조세심판원의 견해에 따르면, 해당 신설규정은 확인적 규정임).

관세법

[심판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기각)

조심 2022관0105, 2023. 7. 5.

[사안] 1989년경 AAA, BBB,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합작투자 계약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지방알코올과 조글리세린(부산물)을 제조하는 쟁점수출자 AAA(말레이시아 합작회사)가 설립됨. 청구법인은 대한민국의 세제,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 제조회사로 AAA 55%, BBB 25%, 청구법인 20%의 투자비율에 따라 AAA와 청구법인은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지방알코올 C081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함. 처분청은 2021. 3. 15.부터 2021. 4. 9.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22. 3. 17. 및 2022. 6. 2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쟁점1") 및 가산세("쟁점2")를 경정·고지함.

투자회사들은 쟁점수출자의 연간 제품생산량을 모두 지분비율에 따라 구매(합작투자계약서 제7.1조)

지방알코올 가격 = 변동비 + 고정비

= All Cost(원가+판매관리비) + Margin(이윤)

*쟁점수출자는 Margin으로 지방알코올 종류와 관계없이 톤당 000을 가산

청구법인은 2022. 7. 19. 및 2022. 7. 20.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쟁점3")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 9. 13. 등 7건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기에 청구법인은 2022. 6. 13. 및 2022. 9. 19.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함.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으므로 ①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② 쟁점물품의 경우 ICIS(국제 시장가격 지수)에서 발표하는 국제시세의 가격추이와 일치하지 않는 점, 근접한 날짜에 수입신고 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청구법인이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수입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하였을 때 ③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50% 이상 저가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비교가격과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④ 2016년~2020년 쟁점수출자의 쟁점물품 평균매출총이익률이 말레이시아 동일업종의 평균매출총이익률(17%)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고, 또한 ⑤ 청구법인은 지방알코올을 판매가격은 일반적으로 톤당 고정값의 이윤을 더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이윤은 원가에 대한 비율로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원가가산법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통상적으로 장기공급계약은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상황 변화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등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내용의 수정이 가능하나 쟁점물품의 가격은 1989년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에 따른 공급계약서에 따라 30년 이상 변동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통상적인 장기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건의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른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쟁점1").

또한, 가산세의 면제신청과 관련해서도 처분청이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또한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2").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의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이력이 있으므로 수입신고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쟁점3").

[약설(略說)]

- 청구법인은 조인트벤처 계약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로 30년 이상 조인트벤처 계약에 따른 가격결정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수관계가 없는 3개의 투자회사들이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여 계약할 시점에 합의한 가격결정공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함. 다만, 수입물품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거래나 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수입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제한이 없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이 있음. 비록 가격결정방법이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국제시세의 가격추이와 일치 않은 점,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상당히 저가로 수입되는 점, 평균매출총이익 등의 수치적인 면에서도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비록 특수관계가 없었던 시점에 조인트벤처 계약에 따라 정하고 있는 가격결정방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수입물품이 특수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삼성KPMG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ey Contacts

이재호

부대표(센터장)

T. 02.2112.0520

E. jlee315@kr.kpmg.com

태선영

Manager

T. 02.2112.6624

E. seonyeongtae@kr.kpmg.com

이윤영

Director

T. 02.2112.7037

E. yoonyounglee@kr.kpmg.com

설민호

S.Senior

T. 02-2112-3977

E. minhoseol@kr.kpmg.com

정선아

S.Manager

T. 02.2112.3024

E. sunahjung@kr.kpmg.com

박재현

S.Senior

T. 02-2112-6596

E. jpark99@kr.kpmg.com

권성욱

S.Manager

T. 02.2112.3543

E. sungwookkwon@kr.kpmg.com

주정연

Senior

T. 02-2112-7038

E. jungyeonjoo@kr.kpmg.com

오혜주

S.Manager

T. 02.2112.0954

E. hoh7@kr.kpmg.com

김솔

Staff

T. 02.2112.7906

E. solkim@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